

경품고시 개정내용

가. 경품제공한도 상향조정(소비자경품 및 소비자현상경품)

-물가상승 등 현실여건을 반영함과 아울러 가격한도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결과 기업의 자율적 경쟁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가액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

● 소비자경품

현 행		개 정	
경품부상품	가액한도	경품부상품	가액한도
1만원 미만	1천원 이하	3만원 미만	3천원 이하
1만원 이상	10%이하로 하되 최고 5만원	3만원 이상	10%이하로 하되 최고 10만원

● 소비자현상경품

현 행		개 정	
경품부상품	가액한도	경품부상품	가액한도
1천원 미만	1만원	1천원 미만	3만원
1천~10만원	5만원	1천~10만원	8만원
10만원 이상	8만원	10만원 이상	15만원

* 소비자현상경품의 총액제한은 현행 제공기간 예상매출액의 1%이내를 유지.

나. 소비자경품 제공기간의 폐지

-현행 소비자경품의 제공기간은 연간 4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경품에 대한 가액제한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제한은 기업의 판촉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제공기간에 대한 제한은 폐지함.

○ 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경품의 제공기간 제한이 없음

다. 소비자현상경품 및 공개현상경품의 제공기간 및 회수의 완화

〈현 행〉

○ 소비자현상경품 및 공개현상경품은 합계하여 연 2회이내, 1회당 20일이내에서 실시가 가능(소비자현상경품을 2회 실시하면 공개현상경품은 실시할 수 없고, 공개현상경품을 2회 실시하면 소비자현상경품을 실시할 수 없음).

〈개 정〉

○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고객유인성이 커 계속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 2회 이내, 1회당 20일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계속 유지.

○ 공개현상경품은 실거래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기업이미지 제고, 문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제공기간 및 회수의 제한은 폐지

라. 사업자경품의 규제완화

〈현 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1사업자당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

〈개 정〉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제공되는 경품과 달리 사업자경품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불공정이 야기될 우려가 적음.

○ 사업자경품에 대한 제한은 외국에서도 일

본을 제외하면 그 예가 없을 뿐 아니라 광고 등 공개적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규제가 곤란한 면이 있음.

◦ 따라서 사업자의 경영수단을 다양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사업자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

-사업자경품을 경품고시상의 제한대상에서 제외(현재 소비자경품,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경품, 공개현상경품의 4종을 3종으로 단순화)하되 거래개시 또는 판매고달성등을 조건으로 대리점, 소매점 등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공정거래법 제23조1항3호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하여 계속 규제.

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품의 제한완화

(1) 공개현상경품의 완화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아 고객유인효과가 거의 없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주로 실시되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적 측면도 강하므로 제한완화

◦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총액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공개현상경품의 제공회수 및 기간제한의 폐지는 전술한 바와 같음)

-특정 지식·기능·기술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개현상경품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현재는 일반인이 용이하게 응모하기 곤란한 논문, 소설, 도안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경품제공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예) 어린이날 글짓기대회, 사진촬영대회, 모델선발대회 등.

-방송업,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및 경기후원업(4개 특례업종)이 실시하는 공개현상경품의 총액을 현재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업종의 경우 특히 그 한도를 낮게 추진할 이유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일반사업자(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와 동일하게 적용.

(2) 실거래없이 내점객에게 제공되는 경품을 현재는 1천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 이미지제고 등을 위한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에 대한 금액제한을 폐지.

(예) 세일기간중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지 백화점에서 구매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수단(지하철, 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등.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5-1號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 行爲의 類型 및 基準 指定告示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3條 第2項 및 同法 施行令 第3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을 다음과 같이 指定·告示한다.

1995年 3月 日
公正去來委員會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 行爲의 類型 및 基準

第1條<目的>이 告示는 獨占規制 및 不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3조 第1項 第3號 및 同法 施行令 第36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不當한 顧客誘引에 該當되어 禁止되는 景品類提供行爲의 類型 및 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景品類의 定義>이 告示에서 景品類라 함은 事業者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隨하거나 去來에 附隨하지 아니 하더라도 廣告등의 方法으로 그 去來相對方 또는

一般消費者에게 提供하는 經濟上 利益을 말한다.

第3條<景品類의 種類>이 告示에서 정하는 景品類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消費者景品類(事業者가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隨하여 一般消費者에게 提供하는 景品類를 말한다. 以下 같다)
2. 消費者懸賞景品類(事業者가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隨하지 아니하고 廣告등을 利用한 懸賞의 方法으로 一般消費者에게 提供하는 景品類를 말한다. 以下 같다)
3. 公開懸賞景品類(事業者가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隨하지 아니하고 廣告 등을 利用한 懸賞의 方法으로 一般消費者에게 提供하는 景品類를 말한다. 以下 같다.)

第4條<經濟上 利益>① 第2條에서 經濟上 利益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物品, 金錢, 割引券, 商品券 其他 有價證券
2. 演藝, 映畫, 運動競技 또는 旅行等에의 招待券
3. 便益等의 用役
4. 其他 顧客을 誘引하는 手段으로 認定되는 經濟上 利益

② 第1項의 經濟上 利益에는 事業者가 特別한 費用을 들이지 아니하고 提供할 수 있는 物품이나 市販되고 있지 아니하는 物品等이라도 그 去來相對方 또는 一般消費者가 通常 代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고는 取得할 수 없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를 包含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經濟上 利益에서 除外한다.

1.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代價의 減額, 引下 또는 受取한 代金의 一部 返還.
2.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アフター서비스
3.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去來相對方의 勞苦에 대한 報酬

4. 商品의 販賣 또는 使用이나 用役의 提供에 附隨的으로 必要한 物品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경우로서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경우

5. 2以上の 商品을 함께 販賣하는 것이 商慣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無料로 提供받았다고 認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以上の 商品에 各各 販賣價格이 表示되어 있고 去來相對方이 希望하면 그중 하나만을 購入할 수 있는 경우

7. 其他 當該 商品이나 用役의 性質 또는 内容 등에 비추어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경우

第5條<去來의 範圍>이 告示에서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라 함은 自己가 生産 또는 販賣하는 商品이나 用役이 最終需要者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流通段階에서의 去來를 말하며 이에는 販賣·賃貸·交換·預金의 受取·信用의 供與·信用卡 利用者의 募集등이 包含된다.

第6條<懸賞의 定義>① 이 告示에서 懸賞이라 함은 抽籤 기타 偶然性을 利用하는 方法 또는 特定行爲의 優劣이나 正誤에 의하는 方法으로 景品類의 提供相對方이나 提供하는 景品類의 價額을 定하는 것을 말한다.

② 第1項에서 抽籤 其他 偶然性을 利用하는 方法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말한다.

1. 抽籤券을 使用하는 方法
2. 領收證, 商品의 容器·包裝等을 利用하여 抽籤을 行하는 方法
3. 商品의 일부에만 景品類 또는 當籤券을 넣은 후 購入者가 어느 商品에 景品類 또는 當籤券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方法
4. 모든 商品에 景品類 또는 當籤券을 넣되 景品類 또는 當籤券價額에 差等이 있고 購入者가 그 景品類 또는 當籤券의 價額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③ 第1項에서 特定行爲의 優劣이나 正誤에 의하는 方法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말한다.

1. 應募券에 一時的으로 明白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한 豫想을 募集하여 그 回答의 優劣 또는 正誤에 의하는 方法
2. 事業者 또는 商品에 관한 情報·知識 其他 趣味·娛樂·敎養 등에 관한 問題의 回答을 募集하여 그 回答의 優劣 또는 正誤에 의하는 方法
3. 競技·演技·遊技等の 優劣에 의하는 方法

④ 이 告示에서 消費者 懸賞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는 것을 包含한다.

1. 商品의 容器·包裝등에 應募券을 넣는 方法
2. 商品의 容器·包裝등에 出題하는 方法
3. 商品을 購入함으로써 解答이 容易해지는 問題를 廣告 등으로 出題하는 方法
4. 商品의 購入者나 去來相對方等を 對象으로 하여 競技·演技等 特定行爲에 의하는 方法

第2章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의 類型 및 基準

第7條<消費者景品類의 不當한 提供行爲>① 事業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金額의 範圍를 超過하여 消費者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提供할 것을 提議하는 경우도 包含한다. 以下 같다)는 不當한 景品類 提供行爲에 該當된다.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	景品類 價額限度
30,000원 미만	3,000원 以下
30,000원 以上	去來價額의 10%以下로 하되 最高 10만원 以下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고 社會通念上 正當인 商慣行에 비추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景品類提供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見本 또는 宣傳用으로 提供하는 當該 商品 또는 用役
2. 자기의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使用되는 1回限의 割引券 또는 割引을 約束하는 證券
3. 創業 또는 開業行事時에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

第8條<消費者懸賞景品類의 不當한 提供行爲>

① 事業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金額의 範圍를 超過하여 消費者懸賞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景品類 提供行爲에 該當된다.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	景品類 價額限度	景品類提供 總額 限度
1,000원 미만	3만원 以下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豫想賣出額의 1% 以下
1,000원 以上 10만원 未滿	8만원 以下	
10만원 以上	15만원 以下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聞發行業, 定期刊行物出版業,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을 營爲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用役의 去來價額에 관계없이 景品類의 豫想賣出額의 5%以內로 한다.

③ 第1項의 豫想賣出額은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算定한다. 다만,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을 새로 販賣하는 경우등 前年度 賣出額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景品類提供豫定期間의 推定賣出額을 基準으로 한다.

1.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을 除外한 其他事業

$$\text{豫想賣出額} = \text{前年度總賣出額} \times \frac{\text{景品提供豫定期日數}}{365}$$

2.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

$$\text{豫想賣出額} = \text{前年度總賣出額} \times \frac{\text{景品提供豫定日數}}{\text{年間用役提供日數}}$$

第9條(公開懸賞景品類의 不當한 提供行爲)

① 事業者가 景品類의 提供總額이 1,500萬원을 超過하여 公開懸賞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不當한 景品類 提供行爲에 該當된다.

② 公開懸賞景品類에 있어 廣告의 方法이라 함은 商品의 包裝이나 容器·팜프렛·新聞·放送·映畫 等에 의한 商品廣告나 企業廣告 등을 말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一般消費者가 容易하게 應募하거나 參與할 수 없는 것을 對象으로 하고 그 內容의 優劣에 따라 特定人을 選定하여 支給하는 代價 또는 報償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公開懸賞景品類의 提供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10條(景品類의 提供回數 및 期間) ① 事業者가 第8條 第1項에서 정한 限度내에서 消費者懸賞 景品類를 提供하더라도 年2회, 1回當 20일을 超過하여 提供하는 경우는 不當한 景品類提供 行爲에 該當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競技後援業·放送業·新聞發行業 및 定期刊行物出版業을 運營하는 事業者가 消費者懸賞景品類를 다음 各號의 回數를 超過하여 提供하는 경우는 不當한 景品類提供行爲에 該當된다.

1. 競技後援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 20회
2. 放送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 50회
3. 新聞發行業 및 定期刊行物出版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 30회

第11條(去來價額등의 算定) ①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한다.

1. 一般消費者가 通常적으로 購入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그 價格의 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거래의 標準으로 使用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2. 2以上の 商品이 組合되어 去來單位가 되거나 同一事業者의 店鋪에서 同一人이 2以上の 商品을 購入한 때에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2以上 商品의 價格의 合計를 基準으로 한다.

3. 商品의 種類에 關係없이 一定金額以上을 購入한 때에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一定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② 景品類價額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한다.

1. 一般消費者가 景品類와 同一한 것을 市中에서 購入할 수 있는 경우에는 通常적으로 購入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그 價格의 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去來의 標準으로 使用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2. 景品類와 同一한 商品이 市販되고 있더라도 各 事業者마다 그 商品의 價格이 現저히 다른 경우에는 前年度 賣出額의 順位別로 上位 3個 事業者의 商品의 價格을 平均한 값을 基準으로 한다.

3. 景品類가 市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景品類提供事業者가 實際로 購入한 價格(直接 製造한 경우에는 製造價格)에 同價格의 25%를 加算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다른 事業者가 景品類의 提供事業者에게 景品類를 供與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도 景品類의 價格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提供된 景品類와 類似한 商品의 去來의 표준으로 使用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5. 2以上の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各各의 景品類價格의 合計額을 基準으로 한다.

第12條(消費者懸賞品類提供期間의 算定基準)

事業者가 懸賞에 의하여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一般消費者에게 미리 提示한 應募期間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景品附商品에 景品類를 직접 넣는 方法에 의하는 當籤券을 넣는 方法에 의하는 경우에는 當該 景品附商品의 販賣開始 日부터 그 當籤券이 應募 또는 景品類의 受領에 有效한 날까지의 期間을 基準으로 한다.

第3章 補 則

第13條(適用排除)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그 比重이 적은 小規模事業者가 提供하는 景品類로서 顧客의 誘引性이 크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이 告示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4條(景品類의 提供禁止對象行爲) 事業者가 景品類를 提供함에 있어서 美風良俗이나 未成年者의 健全한 成長을 沮害할 憂慮가 있거나 其他 欺瞞的인 懸賞方法으로 景品類를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特定한 消費者懸賞景品類의 提供禁止) 2以上の 商品을 購入하여야만 文字·繪畫·符號 및 카드등의 組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이나 2回以上 商品을 購入하여야만 應募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에 의한 消費者懸賞景品類의 提供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期間 등의 算定基準)이 告示에서 景品類의 提供回數 및 期間은 歷年을 基準으로 算定한다.

第17條(他法과의 關係) 事業者가 懸賞에 의하여 景品類를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懸賞內容이 射倖必을 誘發할 憂慮가 있는 施設 또는 方法

으로 營利를 圖謀코자 하는 行爲인 때에는 「射倖行爲等 規制法」의 適用을 받는다.

第18條(其他 類型의 景品類提供行爲)이 告示에서 規定하는 景品類提供行爲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去來相對方인 事業者에게 當該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 開始 또는 일정한 去來高의 達成 등을 條件으로 過多한 經濟的 利益을 提供하는 등 當該行爲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3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違反된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同法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가 된다.

第19條(代理店 등의 景品類提供行爲) 特定製造會社의 製品만을 販賣하는 代理店 등의 景品類提供行爲는 當該 製造會社가 代理店 등의 景品類提供行爲에 直·間接적으로 關與한 경우 當該 製造會社의 景品類提供行爲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이 告示는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이 告示 施行 前에 이루어진 行爲에 대하여는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指定告示(公正去來委員會 告示 第1993-12號)의 規定을 適用한다.